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서식

서 식

※ 서류는 지원신청(계획) 1회, 지원금신청(완료보고) 1회 등 총 2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신청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지원 신청(계획) ◆

【제1호】 : 지원신청서

【제2호】 : 추진계획서

【제3호】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 표준견적서(양식)

- 지원금신청 :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 필요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 ◆

【제5호】 : 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6호】 : 지원금신청서

【제7호】 : 완료 보고서

【제8호】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제9호】 : 하자보증이행각서

【제10호】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제1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변경/포기 : 선정 된 사업에서 시공/제작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 사업을 포기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사업 중 변경신청 ◆

【제12호】 :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13호】 :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참고자료 ◆

【별표 1】 : 지원제의 업종 총괄표

【별표 2】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제출자료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소상공인 작성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서식)
		2. 추진계획서 1부(제2호서식)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소상공인 발급서류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필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제작(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7.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8.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화성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해당시 제출	제작(외주) 업체로부터 수령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0.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CCTV 시공 시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① CCTV 시공 개수와 상관없이,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6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는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제출 불필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참고 요망)
	소상공인 발급서류	11. 건축물 대장 1부 (발급처: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장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사업장에서 베리어프리 기능 미탑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제출 필수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발급 필수*
		12. 우대조건 확인서류

• 우대사항(가점부여)

-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자(2점, 주민등록초본 기준)
- 임차사업장(2점, 임대차계약서 기준)
- 행복화성 지역화폐 가맹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1.5점, 사업 공고일 기준)
- ※(지역화폐, 배달특급, 착한가격업소) 화성시 자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타(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 (1.5점, 중복 불인정)

[제2호 서식]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 추진계획

※별도페이지 가능

구분	주요내용
사업장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현황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원을 통해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과 필요성을 자세하게 기술하세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매출액 향상 등)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2.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외부 사진)

※ 사진 첨부 필수,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 (매장 내부 전면)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귀하와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① 한국생산성본부 및 소상공인성장센터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등
-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 회원유지기간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상당)하는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참고)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화성시 및 한국생산성본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025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_____ (인)

한국생산성본부 귀중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점포명 :
주소 :
연락처 :
견적일 : 2025년 월 일
공급가액 : 3,000,000 원
부가세액 : 300,000
원
합계금액 : 원

공 급 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업태		종목	

종류	구분	사 양	규격 (mm)	수 량	단 가	가 격(원)	비고
※단위사업 기재 : 옥외 간판교체							
LED	신규	프레임-갈바	7500*70 0	1	200,000	200,000	
		삼성 LED소자	3구	100	2,000	200,000	
		채널문자-알루미늄, 캡	650*650	8	25,000	200,000	
Flex	신규	프레임-A/L Bar	5000*80 0	1	200,000	200,000	
		화면부-3M Flex	5000*80 0	1	200,000	20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2W	6	50,000	300,000	
		장수표 32W 램프	32W	10	20,000	200,000	
Flex	천갈이	화면부 - 3M Flex	800*200 0	2(양 면)	200,000	400,000	
유리창썬팅	교체	조명용 썬지 실사출력	3400*23 80	전면	400,000	400,000	
스카이장비				1	400,000	400,000	
시공비				3인	100,000	300,000	
공급가액 계						3,000,000	VAT 별도

- ※ 단위사업명, 종류, 제작구분, 사양을 상세히 기재
- ※ 시공업체는 시 관내 소재 업체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직인 날인 필수

[제5호 서식]지원금 신청서는 지원신청 이후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제출하는 서류**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선정업체)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공통 (필수제출)	1. 체크리스트 1부(제5호서식)	
	2. 지원금신청서 1부(제6호서식)	
	3. 완료보고서 1부(제7호서식)	
	4. 국세청 세금신고용 증빙자료 1부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시공업체 직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5.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1부 ☞①입금날짜 ②입금금액 ③입금자 ④입금계좌 ⑤수령자 ⑥수령계좌 =6가지 내역 필수	
	6.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통장사본 제출	
	7.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부(제8호서식)	
	8. 하자보증 이행각서 1부(제9호서식)	
해당 업체	<u>옥외 광고물</u>	9.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1부(간판,전광판,네온 등) ☞ 신고(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제10호서식)
	<u>CCTV</u>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부(제11호서식)

▶ 본 지원금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공동대표 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에 관한 위임, 제출하는 지출증빙(입금자,수령자) 책임대표자 1인으로 통일.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에 동의합니다.(부가세 및 자부담금 지원 불가)

▶ 필수서류 누락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선정업체명		선정업체 대표	(인)
-------	--	---------	-----

▶ 선정업체는 시공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자임.(시공업체가 상단에 절대 서명하지 말 것)

2025년 월 일

한국생산성본부 귀중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보고서

1. 추진개요

단위사업	<input type="checkbox"/> 점포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지원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기간
	1. 2. 3.	2025년 월 일 ~ 월 일
지원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시공 전/후 사진 <input type="checkbox"/> 과제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설치결과 ※ 시공 전/후 차이 명확하도록 촬영

※별도페이지 가능

시공(제작) 결과물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업 체 명	대표자
-------	-----

[경영환경개선사업 일반]

1.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② 상인회, 연합회, 협회 ③ 주변 사업자(口傳) ④ 시공업체 추천 ⑤ 기타(방문 등)

2.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시작 적정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3월 ② 4~6월 ③ 7월~9월 ④ 10~12월 ⑤ 기타 ()

3. 추후 본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인터뷰에 참여가능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지원을 통한 정량적 성과]

4. 매출 및 고용증대

구 분	사업 후 예상 되는 매출/종업원 수 상승률은 몇 %/명입니까?				
※ 매출액	① 0~5%	② 6~10%	③ 11~15%	④ 16~20%	⑤ 20% 초과
※ 종업원수 (4대보험 가입자)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지원 만족도]

5. (전체 만족도) 귀사의 금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6. (컨설팅 만족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컨설팅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7. (지원 효과성)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8. (지원과정의 편리성)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은?

- ① 매우 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9. (충실성 및 차별성) 타 지원사업내용과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별표1]

**『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표준산업분류	업종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 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 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